

# 2021학년도 법학부 학사운영 규정집

총합본 제정 : 2019. 1. 1.(시행)

개정 : 2019. 8. 19.

개정 : 2020. 3. 2.

개정 : 2021. 2. 2.



광운대학교

## 제1편 전공교과과정, 전공필수교과목 및 부전공 등

1. 전공교과과정 및 전공필수교과목(전공필수과목 제외/ 전공선택 과목은 세부전공 상관없이 수강 가능)

	일반법학전공	국제법무전공	과학기술법무전공
1-1	헌법1, 민법총칙1, <b>법과정의*</b>	헌법1, 민법총칙1, <b>법과정의*</b>	헌법1, 민법총칙1, <b>법과정의*</b>
1-2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b>법률용어론*</b>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b>법률용어론*</b>	헌법2, 민법총칙2, 형법총론1, <b>법률용어론*</b>
2-1	채권총론, 형법총론2, 행정법총론, 상법총론, 기본권론	채권총론, 형법총론2, 국제법1	채권총론, 과학기술법제론, 지적재산법
2-2	행정구제법, 회사법, 형법각론, 채권각론	국제법2	특허법, 법정보학, 행정구제법
3-1	물권법, 어음수표법, 노동법, 부동산공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제계약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법개론, 상표법, 민사소송법
3-2	헌법소송법, 가족법, 보험법, 행정법각론, 세법, 민사소송실무형사정책	영문계약실무클리닉, 국제거래법	인터넷법이론과 실무, 디자인보호법
4-1	경제법, 형사법판례세미나, 행정법판례세미나, 형사소송실무	국제경제법	전자거래법, 특허심판과 소송실무
4-2	국제조직법, 담보물권법	동물법	정보보호법이론과 실무, 저작권법

\* 「법과 정의」, 「법률용어론」은 학과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면제 기준의 전공취득학점에 포함(2021. 2. 2.부터) : 과목 표시는 「기선」으로 표시됨(유의 : 졸업학점의 전공 필수 또는 선택에 해당하지는 않음)

### 전공필수과목

구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일반법학전공	채권총론	행정구제법	민사소송법	
국제법무전공	채권총론, 국제법1		민사소송법	
과학기술법무전공		특허법, 행정구제법	민사소송법	

2. 부전공, 복수전공 등

(1) 제도의 의미

입학한 학생이 학과 전공을 이수하면서 심화전공이나 복수·부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과전공	입학학과의 전공이다.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전공을 <b>45학점</b>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심화전공	입학학과나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을 심화하는 것으로서 어떤 전공을 최소 <b>45학점</b> 이상 이수한 후 그 전공을 추가로 <b>15학점</b> 이상 더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총 <b>60학점</b> 이상/단, <b>2016학번 포함 이전학번은 25학점 이상 이수하여 총 70학점 이상</b> ). 심화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복수전공	입학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b>45학점</b>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하고,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부전공	입학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을 <b>21학점</b>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2) 복수 (심화)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는 학과

생활체육학과는 이수할 수 없는 학과이며, 학제(4년제, 5년제)가 다른 학과들 간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3)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 및 신청 시기

복수전공은 다른 학과 전공을 45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학위증에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이 모두 표시되며, 부전공은 다른 학과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학위증에 부전공이라고 표시된다.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의 첫 번째 신청은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신청한다. 첫 번째 신청 이후에도 매년 매학기에 신청 기간이 있다. 또한 매학기 소정의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 동일하게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에 동일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거나, 자기학과와 복수전공학과 간에 타 교과 전공인정 과목인정제가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 이를 자기학과 혹은 복수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경우, 자기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범위는 9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부전공에도 적용된다.<끝>

## 제2편 법학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

1. 법학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수여될 각종 장학금은 아래 규정될 사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지급될 수 있으며, 학생이 스스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학생은 매 학기 취득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의 종류는 접수 및 선발 부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성적장학금 및 프론티어 장학금 / 문의처 : 법학부 사무실(한울관 220호, Tel. 02-940-5340)

- 법학부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 법학부는 매 학기마다 학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신청양식은 게시된 양식에 따르고, 법학부 사무실(한울관 220호)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부 교수 3인 이상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가계곤란장학금 및 국가고시 장학금 / 문의처 : 학생복지처(복지관 202호, Tel. 02-940-5032)

- 학생복지처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 해당 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신청방법은 광운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선발과 수혜에 대한 중복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학기에 한함
- (2) 장학금은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봉사장학금 및 교내 근로봉사를 통해 받은 장학금
  - 2) 국가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 3) 외부기관에서 지정한 학생의 장학금
  - 4) 특수목적 장학금(가족, 국가고시 2종) : 등록금 범위 내
- (3) 자퇴 또는 광운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로 전출하는 학생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4) 성적 및 프론티어장학금은 신청한 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대상이며 복학학기에 신청 불가하다.
- (5)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4. 장학금의 신청자격과 선발기준은 다음 요건에 따른다.

(1) 성적장학금

1) 신청자격

- ① 신청일이 속한 해당 학기의 성적에 따라 수여되므로 특별한 제한은 없음
- ②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선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

③ 장학금 분배 기준액(다만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학년별 수석(등록금 100%), 참빛(등록금의 50%), 비마(등록금의 25%)

2) 제출서류

① 강의수강내역서 - 반드시 학번, 학과, 전공, 본인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함

\* 출력방법 : KLAS 로그인 -> 메뉴에서 대학생활-학습결과-수강/성적조회 클릭 -> 학번과 수강과목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비율 조정 후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출력

② 공인 외국어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과 대상임(3단계 구분하여 적용)

3) 선발기준

① 주요 기준

학년	선발기준		비고
1학년	1학기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 전공과목 6학점 이상	* 공인 외국어 성적(평점에 가산점 적용)(2021.2.2. 개정) ① 토익 기준 : 700점~799점 (0.2점 가산)
	2학기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 전공과목 9학점 이상	
2학년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 전공과목 15학점 이상(다만 복수 및 부전공자는 법학 전공과목 9학점 이상, 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학점은 법학, 부, 복수 전공을 불문함)		② 토익 기준 : 800점~899점 (0.3점 가산) ③ 토익 기준 : 900점 이상 (0.4점 가산)
3학년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5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 전공과목 15학점 이상(다만 복수 및 부전공자는 법학 전공과목 9학점 이상, 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 부, 복수전공을 불문함)		* 전공학점 계산 시 「법과 정의」 또는 「법률용어론」은 제외(오직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면제기준의 전공취득 학점에만 적용)
4학년	[학교기준] 직전학기 취득성적 12학점 이상 + 평점 3.0 이상 [학과기준] 전공과목 9학점 이상(복수 및 부전공자는 법학전공과목 6학점 이상, 나머지 3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 부, 복수전공을 불문함)		

\* 참고 : 일반복학의 경우 4학년 재학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하면 장학금 산정은 2개 학기 부분만 4학년 학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6학기 때 4학년으로 일반복학 한 경우 → 남은 학기는 총 3학기이지만, 4학년 기준 대상은 7, 8학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세부 기준

- 법학부 신청자는 학교기준과 학과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학점 수는 학기말 취득학점)

- 성적발표일 전에 성적장학금을 신청하므로 평점 3.0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점 3.0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법학부 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하므로 법학전공과목에 대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각 학년 및 학기 단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수강 신청 시 확인 필수)
  - 법학부 재학생으로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더라도 법학전공학점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선발대상이 됨)
- ※ 예시 : 법학부 재학생으로서 경영학을 복수전공 중인 3학년 학생은 해당 학기에 총 1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그 중 법학전공 학점이 9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나머지 6학점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은 법학, 복수, 부전공을 불문함)

③ 공인 외국어 성적 가산점 기준

외국어	점수 기준
TOEIC	700점 이상(정규 토익)
TOEFL(IBT)	73점 이상
TEPS / New TEPS	600점 이상 / 327점 이상
JPT	600점 이상
新) JLPT	N2이상
CPT	700점 이상
新) HSK	4급 이상

- 장학금 신청자는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의 증빙자료를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점수에 따라 3단계(토익 기준 참조)로 나누어 학점에 반영함
- 평점 3.5를 획득한 학생이 토익 850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0.3 가산) → 평점 3.8로 간주함
- 공인 외국어 성적은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발급문서라야 함

(2) 프론티어장학금

1) 신청자격

- ①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 학점이 2.5 이상인 자
- ②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제출서류

- ① 프론티어장학금 신청서 1부 : 첨부파일참조(반드시 지도교수 확인 서명 받아 제출)
- ②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파일 참조
- ③ 기타 봉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④ 수강내역서 - 반드시 학번, 학과 및 전공, 본인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함

\* 출력방법 : KLAS 로그인 -> 메뉴에서 대학생활-학습결과-수강/성적조회 클릭 -> 학번과 수강과목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비율 조정 후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출력

3) 선발기준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프론티어	등록금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li> <li>-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점 2.5 이상인 자 (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li> <li>※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li> <li>-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li> <li>※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li> </ul>

(3) 가계곤란(화도/동해)장학금 → 2020학년도 1학기 선발부터 신청절차 및 명칭 변경.

1) 신청자격(동시 충족조건임)

- ① 신청학기 재학예정자(재학생, 휴학학기 교내장학금이 없는 복학생)
- ② 신청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 0~8구간으로 확인된 자  
(상기조건은 화도/동해장학금 1차 신청자에 한하며, 2차 신청할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도 가능)
- ③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2학점 이상(F 제외한 학적부 성적 기준)
- ④ 직전학기 취득 평량평균(계절학기 제외)이 2.0 이상(F, D 포함한 학적부 성적 기준)

2)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

⇒ 광운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 신청시기와 방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해야 함.

(4)국가고시 장학금

1) 신청자격

장학금명	신청자격	장학금액	장학금지급기간
국가고시 장학금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법고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 등고시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li> <li>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 (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 이상인 자</li> </ul>	1차 합격자 : 등록금 전액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최종 합격자 : 등록금 전액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 까지
국가고시 장학금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자</li> <li>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 (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 이상인 자</li> </ul>	1차 합격자 : 등록금의 25%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최종 합격자 : 등록금의 50% 지급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 까지

2) 신청방법

⇒ 광운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함.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장소
계속수혜자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서	첨부파일(소정양식)
신규수혜자	국가고시 장학금 신청서	첨부파일 (소정양식)
	해당 시험 합격 증명서 사본	해당기관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기등록자에 한함)	

- 신청기간은 1, 2학기 각 1회차 2회차 나누어 예정되어 있으며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상시 참고하여 확인해야 함.

- 첨부 파일은 당 해 신청기간에 (법학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가 공지할 예정

4)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고지서 선 감면

5) 유의사항

- ① 정규학기(등록학기 기준 8학기, 건축학과는 10학기) 내에서만 지급함.
- ② 합격일 후 도래하는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 재학상태로 신청한 경우에 유효함. 학기 기준일은 개강일임.  
(예시) 2020년 3월 1일에 합격자 발표한 경우, 2020-1학기, 2020-2학기 중 재학상태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유효함
- ③ 장학생의 등록 후 휴학제도 폐지. 장학생 선발 후 휴학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됨.
- ④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F학점을 제외한 이수학점임.
- ⑤ 직전학기 취득성적 평량평균은 F, D학점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임<끝>

### 제3편 법학부 졸업요건과 그 면제사유

1. 법학부는 학칙의 범위 내에서 졸업요건을 정하며, 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1) 졸업논문

- 논문양식(각주 등)을 준수하여 작성(표절 요건 심사 가능)
- 주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선정
- 분량은 A4, 10포인트, 줄간격 180 기준으로 40매 내외

#### (2) 졸업시험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국제법, 국제계약법, 민사소송법, 세법, 형사소송법, 특허법, 정보통신법,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3과목을 선택 가능
- 각 과목당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통과함
- 매년 4월과 10월 중 시행(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면제 그리고 졸업유예 신청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양식에 따라 확인서를 직접 또는 E-Mail(lawassist@kw.ac.kr)로 제출할 수 있다. 각 신청자는 서류 또는 확인서를 발송한 후 반드시 학부 사무실(02-940-5340)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시행은 일정 기간 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4.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면제는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 (1) 외국어 성적

- ① 토익 TOEIC : 800점 이상
- ② 토플 TOEFL(IBT), TEPS, TOEIC Speaking, JPT, (新) JLPT, CPT, (新) HSK, OPIC 등의 성적도 토익 800점 이상에 상응하여야 한다.
- ③ 어학성적 증명서 유효 기준 : 대학본부로 졸업대상자 학부 송부일까지 유효한 발급문서라야 함.

#### (2) 공무원시험, 대학원 합격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법학부 교수회의에서 자격 인정을 심사할 수 있음)
- 로스쿨 입학 예정 또는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
- 시험합격 증빙서류 또는 현재 근무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3) 취업자

-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근무처 양식 및 건강보험공단 발급 양식)
- 재직증명서는 어학성적 증명서의 유효 기준에 따른다.

#### (4) 법학전공취득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2020학년부터 84학점, 종전 학번은 78학점 적용)

- 성적증명서 제출(전공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전공선택 또는 전공필수로 표기된 과목으로 한정함)
- 법과정의(3학점), 법률용어론(3학점)은 전공 취득학점에 포함(2021.02.02.개정)

(5) 법학적성시험(LEET)

-법학적성시험(LEET) : 100점 이상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3학년 또는 4학년 재학 중에 실시된 시험의 증명서 제출(2021.02.02.개정)

<끝>

## 제4편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2018. 08. 14. 교무처 문서 기준)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8학기이상, 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근거

가.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및 제8조(출석점수)

제7조(공결 및 유계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 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나. 참고 사항

- 상기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8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시험, 과제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다. 교육지원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4.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기간

- 공고한 기간 내

나.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 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 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끝>